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10. 15, 9:00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

10월 7일부터 시작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16일 18시 30분 종료된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가입신청 기간 종료 전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가입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단, 병역 이행자에 대해서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심사는 10.19일부터 11.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결과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 선택 유형과 심사결과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10.30~11.2일(잠정)에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잠정 11.2~5일)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16 ~ 11.27일(토·일요일 제외) 취급 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계좌개설을 완료해야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 후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계좌개설 기간(11.16 ~ 11.27일)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

가입 신청 신청자	10.7(수)	10.8(목)	10.12(월)~10.16(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전체 가입신청	
심사 일정	10.19(월)~11.13(금)		계좌 개설 신청자	11.16일(월) ~ 11.2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현재) 12% → ('27년 안) 15% 또는 2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사이트(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1686)
			주무관	신민영 (02-2100-1684)
<협조>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	책임자	부 장	배성윤 (02-2128-8216)
		담당자	팀 장	유인태 (02-2128-8176)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안내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금리

기본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2~3%

※ 취급기관별 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공시

지원내용

이자소득 +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6, 12%)

※ 가입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구분		소득기준(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 연소득·연매출	② 가구중위소득 (맞벌이 2인 가구**)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우대형	중소 신규 기업 재직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12%
		소상공인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원 이하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함
** 맞벌이 2인 가구: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병(兵)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도 가입 가능

가입 전 필수 체크포인트

-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11월 27일(금) 19시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완료)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연계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있는 청년의 가입이 가능하며, 전년도('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
*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현재 복무 중인 병(兵)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신청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10월 14일)까지 가입신청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우대형 대상은 가입신청일('26.10월~) 기준
전년도('25년 1~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입니다.
-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없이 전산연계 통해 심사 예정)
- 중소기업 신규·재직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
(이직 횟수 2회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갈아타기 순서



-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면
- 2 서금원에서 가입 가능 안내를 해드립니다.
- 3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4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 계좌개설 마감일인 11.27일(금) 오후 7시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으로 특별중도해지 신청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처리 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마세요.



청년미래적금 관련 문의 : 1397 바로 3번



청년미래적금 웹사이트 : <https://fill4young.kinfra.or.kr>